



서울특별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·시행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관리조치 알림

1. 관련근거
 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의2
 - 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
2. 마라톤 등과 같은 대규모 체육행사의 경우 현행법에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준하여 안전관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나,
3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일부개정으로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'24.3.15.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개정된 법에 의거 안전관리조치를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.
4. 아울러, 해당 법령 소관부서 및 서울시,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체육행사 안전관리·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주요 개정내용 -

제13조의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·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**'23.9.14. 본조신설, '24.3.15. 시행**)

부칙
제2조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구1-25(재난부서), 서관과01-174, 서사01-43, 서울특별시출연기관, 서울시투자기관

주무관 서재원 인파안전팀장 이상문 재난안전예방과장 02/22 강남태
협조자 주무관 김준식

시행 재난안전예방과-2838 (2024. 2. 22.) 접수 체육진흥과-2272 (2024. 2. 22.)

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(무교동 96) 프리미어플 / http://www.seoul.go.kr
레이스 9층

전화 02-772-7103 /전송 02-772-7306 / seojw83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